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요령

본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공업발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설정 및 품질인증 요령의 내용임.

<편집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의 설정 및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인증"이라 함은 인증대상 재활용제품이 이 요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험·분석·평가되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규격·품질기준"이라 함은 품질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통상산업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재활용제품별 규격 및 품질기준치를 말한다.

3. "인증마크"라 함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인증되었음을 해당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 등에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②기타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공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품질인증대상)

이 요령에서 품질인증대상으로 하는 재활용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에 지정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된 폐자원을 이용한 제품으로서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국립기술품질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업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국립기술품질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기술원 화학부장이 대행한다.

④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기술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통상산업부 기술품질국장(당연직)
2.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당연직)
3. 기술원 부장(당연직)
4. 한국자원재생공사 기술이사
5.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상근책임자
6. 대학에서 10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
7. 국·공립연구소 등 공인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한자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기술원장은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실무위원회를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원의 품목담당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품목담당연구관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품목담당과장이 대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기술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술원 품목담당 과장
2. 대학에서 5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 기술담당부장
4. 국·공립연구소 등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자

- 5. 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단체(협회, 조합 등)의 부장급 이상인자
-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한 자

제6조(심의위원회 기능)

-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품규격 및 품질기준의 적정성 검토
 - 2. 실무위원회의 종합평가결과 및 품질인증부여 검토
 - 3. 기타 품질인증심사에 관련된 주요사항 검토

제7조(실무위원회 기능)

-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규격 및 품질기준안의 작성 및 통상산업부와 협의
 - 2. 제품의 시험·분석·평가 및 현장실사
 - 3. 종합평가보고서작성 및 심의위원회 상정
 - 4. 기타 품질인증실무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 3장 규격 및 품질기준

제8조(규격 및 품질기준안의 작성)

- ① 기술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활용제품에 대한 규격 및 품질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기술원장은 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등을 제정할 때에는 그 안을 실무위원회에 작성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규격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③ 기술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관에 의뢰하여 규격 및 품질기준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④ 기술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 재활용제품의 규격을 KS규격화 할 수 있다.
- ⑤ 기술원장은 재활용제품의 규격이 KS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KS규격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품의 시험·분석·평가를 위한 품질기준은 실무위원회에서 일반제품의 성능수준을 목표로 하여 별도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규격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 ① 기술원장은 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관계부처, 생산업체, 학계, 연구소 또는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기술원장은 규격 및 품질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을 결정할 경우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품질인증

제10조(품질인증의 신청)

-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다음 각호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신청한 제품의 구조·성능·용도 등에 관한 설명서
 - 2. 제품(단, 제품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품의 견본을 첨부함)
 - 3. 제품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4. 공인 규격 또는 품질인증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 ② 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보완토록 할 수 있다.
- ③ 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한다.
 - 1. 제3조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인지의 여부
 - 2. 기술수준이 현저히 저하되는지의 여부
- ④ 기술원장은 제1항과 제3항을 검토한 후 이를 실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또는 신청인에게 반려한다.

제11조(품질평가)

실무위원회는 신청제품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제품의 시험·분석·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제품의 시험·분석·평가)

- ① 실무위원회가 실시하는 제품의 시험·분석·평가는 기술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시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규격에 따라야 한다.
- ③ 실무위원회는 제품이 증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또는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실사)

- ① 기술원장은 기술원직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5인 이내의 실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 ② 현장실사팀은 신청제품이 인증대상제품인지의 여부, 품질수준 및 생산공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현장실사팀은 평가대상 제품을 생산현장에서 직접 수거하여 현장실사후 실무위원회에게 제출하고 이를 평가시료로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사팀은 현장실사 완료후 7일 이내

정책 - 2

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실사보고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종합평가보고서)

①실무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평가를 신청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평가를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인증서 교부 및 결과통보)

①기술원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서 교부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표시)

①기술원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인증마크인 별지 제5호의 『GR』 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표시는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제17조(품질인증제품의 지원)

관계기관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4조 및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요령(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7-87호) 규정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자(제품포함)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에 있어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기금 또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
2.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3.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4. 재활용산업육성자금
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금 융자
6. 창업지원기금의 자금 융자
7. 단체적 수의 계약 품목 지정
8.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우선 구매
9. 기타 관계법 및 법률에서 정한 지원 등

18조(이의신청)

①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기술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구체적인 신청사유 및 증빙자료

③기술원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인증서의 변경)

①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하단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요할 때에는 기술원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시
2. 공장 양도·양수시
3. 제품의 생산중단, 기타 변경사항 등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의거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를 정정하고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변경전 품질인증서는 회수한다.

제20조(경비부담)

기술원장은 제12조 제1항에 의거 기술원 이외의 시험연구기관에 제품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동기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사후관리등

제21조(사후관리)

①기술원장은 품질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중 유통제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품의 품질과 품질인증에 관련된 사항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후관리는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하여 제품을 시험·분석·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운 경우 당해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시료가 증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시험·분석·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처분)

①기술원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가. 제16조(표시)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 나. 인증제품의 사후관리결과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개선 명령처분을 받고 기일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나. 인증제품의 사후관리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②제1항 1호에 의거 처분을 받은 자(제품포함)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하고 그 결과를 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제2항의 개선결과를 보고받았을 경우 제품의 시험·분석·평가 및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④기술원장은 제1항 2호에 의거 처분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2호에 의거 처분을 받은 해당업체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새로 출하되는 제품에 인증표시를 할 수 없다.

제23조(규격 및 품질기준의 폐기)

①기술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을 폐지할 경우,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규격 및 품질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의 생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이 폐지된 경우, 해당제품의 생산업체는 관보게재일 혹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새로 출하되는 제품에 인증표시를 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는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기 위한 시설의 개체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출하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기술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시설의 개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재평가)

①기술원장은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재평가결과 당해제품이 개정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 이를 해당업체에 즉시 통보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통보를 받은 해당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새로 출하되는 제품에 인증표시를 할 수 없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는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기 위한 시설의 개체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출하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⑥기술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시설의 개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및 여비지급)

기술원장은 품질인증을 위하여 참석한 위원 및 현장실사자, 규격 및 품질기준안의 작성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준수사항)

기술원장 및 각위원회 위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품질평가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 ② 품질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누설 등 사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포상)

기술원장은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기술원장은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1. 이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